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934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9. 30  
제출자 : 고성군수

## 1. 제정이유

- 재난발생시 자원봉사 등 직·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극대화하고자 자연재해대책 법이 개정되어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도록 됨에 따라 지역자율 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방재단의 조직·임원 및 임무 등·단원의 해임사유를 규정함.

(안 제3조 내지 제 5조)

나.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및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의 반영을 위한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방재단의 주요임무 및 소집·운영·금지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내지 10조)

라.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 실시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내지 13조)

마.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나.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5-413호(2005. 09. 05. ~ 2005. 09. 26.)

⇒ 의견제출사항 없음.

## 4.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명칭은 "고성군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위촉한다.

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고성군에 거소가 있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읍·면방재단원은 군방재단원이 되며 군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읍·면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4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대표는 읍·면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5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2. 단원이 고성군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해손한 경우

**제6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 ③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④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 ⑤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⑥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및 지원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8조(소집)** ①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치 단체의 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등)** ①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군 재난 종합 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회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 ⑩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금지 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출입증 발급)** ①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제12조(교육)** ①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3조(훈련)** ①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감독)** ①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위 촉 장 양 식

제 호

#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별지 제2호 서식]

## 고성군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개인>

등록번호 :

성명	(성별)	연령			혈액형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격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난 현장경험						
희망 활동내용						
[특이사항]						

상기 본인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단체>

등록번호 :

단체명		대표자	(휴대전화: )	
주소			대표전화	
담당자	(휴대전화: )	부서명		
인원	남명	여명	총인원	명
장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명			
전문분야				
활동희망분야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 가입희망 회원명부 ]

[단체명]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자격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부	혈액형	비고
1							
2							
3							
4							
⋮							

[별지 제3호 서식]

## 활동확인서

성명	(인)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유			
	방법			
	시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시간)		
	장소			
	내용			
[건의사항]				
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	

본인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고성군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 서식]

##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명	활동상황		비고
		횟수	시간	
1				
2				
3				
: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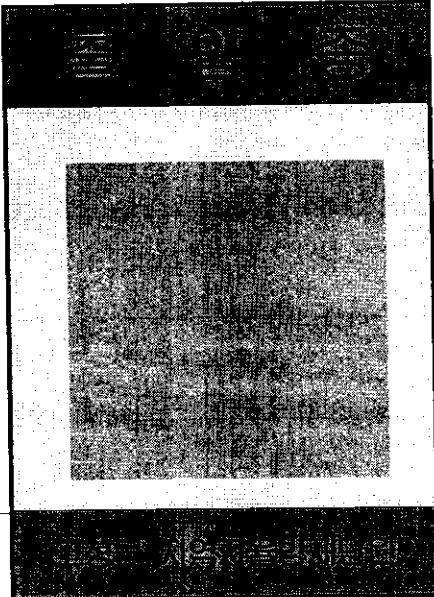
##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출 입 증	
<p>NO. 000      결액형      형</p> <p>성 명 :</p> <p>주민번호 :</p> <p>소 속 :</p> <p>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p> <p>200 . . .</p> <p>고 성 군 수</p>	 <p>5.5cm</p> <p>7.7cm</p>